

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공고

육아휴직 급여 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지급 처분 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2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- 1. 건 명: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 (생년월일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 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 및 내용	처분사유		
1	서*호 (1992. 1. 7.)	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통지서	육아휴직 급여 부지급	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지 않아 부지급 처분	수취인부재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6. 9. 2. ~ 2026. 9. 16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모성보호팀 담당자 변하민 (☎031-560-19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